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2021.7.1

셀레니언자산운용㈜(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 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

1.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판매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되는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정보
3.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의 정보
4.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회사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포함)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회사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부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부서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역 (단, 집합투자기구등의 초기 시딩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아래 대상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 거래제한 종목으로 지정

-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한 회사
- 임직원이 비공개 또는 비공유 또는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검토하도록 요청받거나 초청된 회사
- 거래 또는 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또는 비공개계약에 대해 직원이 합의한 회사
-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지정한 기타 회사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상충 유형	주요 충돌관계	세부 내용	대응 방안
위임받은 업무를 벗어난 영업 행위	임직원 ↔ 고객	회사 또는 임직원이 고객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를 벗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함	준법감시 및 해당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보고, 검토 및 승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 의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운용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개인투자행위	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사적투자행위	사전승인, 사후보고 및 모니터링
대외활동	회사 ↔ 임직원	회사 업무 이외의 사적활동	사전승인 및 모니터링
선물 및 향응 수령	임직원 ↔ 고객	업무와 관련한 선물 및 향응을 수령하는 행위	사전 승인, 사후보고 및 모니터링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고객 ↔ 고객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고객 ↔ 고객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사전자산배분	고객 ↔ 고객	다수의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한 통합 주문	사전자산배분 확인 및 모니터링
오류수정	회사 ↔ 고객	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보고 및 수정방법 검토/승인

2) 상기 이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관리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해상충 관리 절차는 다음의 원칙에 따릅니다.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
-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것
-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과 사전에 협의하고 당해 팀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해당 이해상충 관련 보고 내역에서 대해 준법감시부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상기 이외에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함)

(1) 고객 이익의 원칙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며, 고객 간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

(2) 이해상충의 방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회사의 관계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3)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 및 대외활동 제한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및 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 허가 없이 회사 이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비밀정보의 관리

비밀정보는 엄격한 정보 차단벽 및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5) 이해상충관리지침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